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각종 허가·등록·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수거업, 응급환자이송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‘납입자본금’ 또는 ‘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’으로, 개인의 경우 ‘영업용 자산평가액’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 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부령 제 호

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

제1조(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3호 중 “자본금”을 “자본금(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,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자본금”을 “납입자본금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어장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 중 “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”를 “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”로 한다.

제4조(「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

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 직영·가맹사업형란 다목 및 같은 호 단체급식형란 다목
중 “자본금”을 각각 “납입자본금”으로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조(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
칙」의 개정)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
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본문 중 “자본금”을 “자본금(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
액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해
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

별표 4 제2호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자본금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고, 법인
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
출자금을 말한다.

제7조(「해운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의 표 중 “자본금”을 “납입자본금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표 및 비고 제2호 중 “자본금”을 각각 “납입자본금”으로 한
다.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경비·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) 법 제31조제3항에서 “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	제38조(경비·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)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<u>자본금</u> 을 갖출 것	2. ----- <u>납입자본금</u> -----
가·나. (생략)	가·나.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)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·정비업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·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7조(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) ① --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자본금(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,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	6. -----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 -----
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	------------

**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행	개정안
제4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”이란 1억원 이상의 <u>자본금</u> 을 말한다. 다만,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	제4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자본금(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